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 Sor.3/2561 호

일반 노동자 거주지 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

태국인과 외국인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거주지를 개발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임.

1977년 투자 촉진법에 노동항목 개선 16조를 따르고 투자위원회는 투자 촉진법 관련 제7항 제 2/2552호를 2014년 12월 3일부터 적용, 그리고 조건과 권리, 혜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함.

항목 종류	조건	권리와 혜택
7.30 일반 노동자 거주지 환경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태국인 필요거주지의 숫자와 크기 명시 필요, 그리고 각각의 건물은 80유닛(크기) 이상 또는 토지가 4,000평방미터 이상 이어야 함사용 하는 토지는 유닛 당 최소 20 평방 미터 여야하고 거주지의 기준은 국제노동협회의 기준에 맞아야 함.거주지 프로젝트에 관련한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정보를 기록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함.외국에서 온 노동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온 사람 이어야 하며 요청자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온라인으로 들어가 거주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함.주차장, CCTV, 24시간 경비원, 청소원, 응급실, 주방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시설이 필요하고 이 기준은 국제노동협회를 따르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A4

항목 종류	조건	권리와 혜택
	7. 임대만 가능하며 임대료에서 오는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받음. 8. 기계를 수입해오는 시간과 작동시간은 연장 하지 않음. 9. 국경지대에 속하는 10개 지방 또는 최저임금을 받는 20개 지방의 경우 법인 소득세를 6년동안 면제받음. 10. 2019년 12월 3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고시한 날부터 시행

고시일 2018년 8월 3일

(General Prayut Chan-o cha)

투자위원회 의장